

1. 개정이유

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,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「영유아보육법」이 개정(법률 제21657호, 2026.5.19. 공포, 2026.11.20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자격 재교부 대상자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안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이수증 추가(안 제18조제2항제3호라목 신설, 안 별지 제11호서식)
- 나. 자격 재교부 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아동권리의 이해 및 아동학대 유형·사례,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윤리 등으로 정하고 4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(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)
- 다. 교육프로그램의 실시기관을 한국영유아보육·교육진흥원 등으로 정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도록 규정(안 제18조의2제3항·제4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7.30.~2026.9.8.)

3) 규제심사 대상
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이수증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자격재교부 교육프로그램)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(이하 이 조에서 “교육프로그램”이라 한다)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교육 내용

가. 아동 권리의 이해 및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

나.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윤리

다.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의 이해

라. 그 밖에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

2. 교육 시간: 40시간 이상(다만,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법 제23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

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1호 가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)

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.

1. 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영유아보육·교육진흥원
2. 영 제2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기관

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.

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,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, 교육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별지 제11호서식 뒤쪽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이수증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첨부서류	발급 신청 시	1. 공통 제출서류 가. 사진(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) 1장 나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 2. 어린이집의 원장: 자격증 사본, 경력증명서,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보육교사: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보육실습확인서(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), 교육훈련시설 수료증(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), 보수교육 수료증(승급자만 해당합니다), 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10,000 원
	재발 급 신청 시	1.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된 경우 가. 자격증(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) 나. 사진(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) 1장 2.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가.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(성명이 바뀐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. 발급 신청 시란의 각 호의 서류 나. 자격증(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) 다.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.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이수증	
자격증업무 담당기관 확인사항		1. 주민등록표 초본(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(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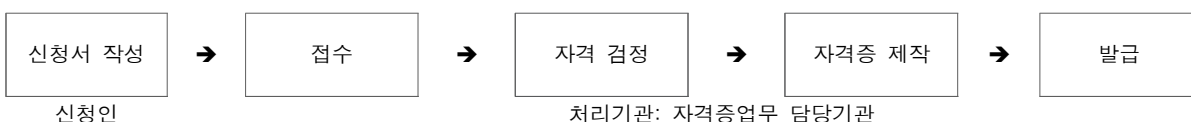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

본인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자격증의 발급 등) ① (생 략)	제18조(자격증의 발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·재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 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	3. ----- ----- -----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라.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</u> <u>교육프로그램 이수증</u>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18조의2(자격재교부 교육프로</u> <u>그램)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8조</u> <u>제3항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</u> <u>하려는 때에는 재교부 대상자가</u> <u>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</u> <u>것을 확인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</u>

프로그램(이하 이 조에서 “교육 프로그램”이라 한다)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교육 내용

가. 아동 권리의 이해 및 아동

학대 유형 및 사례

나.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윤리

다.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의

이해

라. 그 밖에 건전한 보육환경

조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
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

2. 교육 시간: 40시간 이상(다만,

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

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

법 제23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

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한

경우 제1호 가목에 따른 교육을

이수한 것으로 본다.)

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

한다.

1. 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영유아

보육·교육진흥원

2. 영 제26조의2제1항 각 호에
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
교육부 장관이 고시하여
정하는 기관

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
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
사람이 부담한다.

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
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
이수증을 발급하고, 교육프로그램
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
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교육부
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
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
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,
교육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
정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
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항을
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